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정정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1-79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10일  
발 의 자 : 정정희, 황영호, 윤유선, 김현희  
강선영, 신낙형, 이충현, 박주선  
송순효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의회정치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운영계획(안 제3조)
- 다. 기능, 구성, 선출방법, 임기, 의원의 사퇴(안 제4조 ~ 안 제8조)
- 라. 의장단 구성, 상임위원회(안 제9조, 안 제 10조)
- 마. 회의, 의안의 발의·제출, 의견반영, 지원 등(안 제11조 ~ 안 제 15조)
- 바. 사무국의 설치, 표창, 준용, 시행규칙(안 제16조 ~ 안 제 1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조, 제3조1, 제5조의2, 제8조
  - 2)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
- 나. 협조부서: 아동청소년과
- 다. 입법예고: 2021. 8. 17. ~ 8. 22.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, 교육, 환경, 문화,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의회”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구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된 의회를 말한다.
3. “청소년 유권자”란 구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소년의회의 의원(이하 “청소년의원”이라 한다)의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로 청소년의회 사무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
  2. 청소년의회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  3. 안전 심의 등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, 청소년의회의 운영결과와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구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, 토론 등 참여활동
2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와의 교류
3.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
4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구의회 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구청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, 조사, 의견제시 등
5.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구성) 청소년의회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의원으로 구성하며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.

제6조(선출방법) ① 청소년의원은 공개 모집하며, 청소년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아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의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권자의 추천, 구 소재 각종 청소년 기관, 시설,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청소년의원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청소년의원의 선출 관련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임기) 청소년의원의 임기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에 종료한다.

제8조(청소년의원의 사퇴) 청소년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의회 의장(이하 “청소년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하여야 한다. 청소년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, 전학 등의 경우
2. 학업,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청소년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질병,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제9조(의장단 구성)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청소년의장 1명과 부의장 2명,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청소년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

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(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)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.

④ 청소년의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,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진행하며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⑤ 청소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소년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청소년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청소년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0조(상임위원회) ① 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, 문화·예술위원회, 인권·복지위원회,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의원의 희망에 따라 9명 이내로 하되, 한 명의 의원은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.

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,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.

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청소년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의안의 발의·제출) 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청소년의원, 상임위원회, 구청장이 발의·제출한다. 다만, 청소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한한다.

② 의안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청소년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함께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상임위원회, 청소년의원, 구청장은 설문조사, 공청회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의견이 의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상임위원회 회부) 청소년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청소년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 다만, 폐회 중이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제14조(청소년의회의 의견 반영 등) 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

예산 편성 시 청소년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사유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의원증, 배지, 비품, 장소제공 등 청소년의회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
2. 국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방문 및 견학
3.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
4. 청소년의회 활동 지원 조직 운영 실비
5. 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

6. 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 자문활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청소년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무국의 설치 등) 구청장은 청소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안검토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 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7조(표창) 구청장은 청소년의원의 임기 만료 시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

소년의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청소년의원에게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.

제18조(준용) 청소년의회의 본회의 및 임시회 운영, 상임위원회의 운영, 의안의 제출·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□ 「**청소년 기본법**」

**제2조(기본이념)**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·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. <개정 2015. 2. 3.>

1. 청소년의 참여 보장
2.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
3.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
4. 민주·복지·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**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

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**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## □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**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**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 1. 21.]